

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2. 12. 30.>

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
호	소호			
0303		냉동어류[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(fillet)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]		
0303	6	브레그마세로티대(Bregmacerotidae)과 · 유클리티대(Euclichthyidae)과 · 가디대(Gadidae)과 · 마크로우리대(Macrouridae)과 · 멜라노니대(Melanonidae)과 · 메르루치대(Merlucciidae)과 · 모리대(Moridae)과 · 무라에놀레피디대(Muraenolepididae)과의 어류. 다만, 제0303.91호부터 제0303.99호까지의 식용어류 설육(屑肉)은 제외한다.		
0303	67	명태[테라그라 찰코그라마(Theragra chalcogramma)]		22%
0303	69	기타	명태[테라그라 찰코그라마(Theragra chalcogramma)는 제외한다]	22%